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선거 선거방송토론회 개최 의무 횟수 상향 등〉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3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5. 20.
3. 회 부 일 : 2026.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선거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법정 대담·토론회의 최소 횟수를 현행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초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하도록 하며,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에 대한 공지·게시 의무의 대상에 사전투표소 등 모든 투표소 입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 ----- -----.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후단 신설>	1. ----- ----- -----3회 이상. 이 경우 최초 1회의 대담·토론회는 제15 8조에 따른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⑥ ----- -----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 ⑭ (생략)	----- ----- ----- ----- ----- ----- -----하고,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 등 모든 투표소 입구 및-----. ⑦ ~ ⑭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법정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선거별 법정 대담·토론회 최소 개최횟수 》

선거 종류	법정 최소 개최횟수	근거 조항
대통령선거	3회 이상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회 이상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시·도지사선거 (개정안)	1회 이상 (→ 3회 이상)	법 제82조의2제2항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회 이상	법 제82조의2제3항

자료: 공직선거법 조문 정리

이 중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의 경우 법정 대담·토론회의 최소 개최 횟수가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 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기간 중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게 됨.

이에 따라 토론회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개최될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자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비교·검증할 기회를 갖기 어려울 수 있고 사전투표 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투표 이후 그 정보를 접한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사전투표 개시일 전날인 2026년 5월 28일 오후 11시에 진행되면서, 사전투표 전에 충분한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¹⁾

1) “서울 토론 언제 하나 했더니... 사전투표 7시간 전 한번 한다”(조선일보, 26.05.28.)

한편, 현행법은 초청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기호·성명 및 불참사실을 중계방송 시작 시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지 방식만으로는 토론회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유권자는 후보자의 불참 사실을 알기 어려워 관련 정보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까지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의 불참사실 등을 기존의 중계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 등 투표소 입구에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검증할 기회를 확대하고 후보자의 토론회 불참 여부, 그 사유 등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선거의 선거

운동기간(13일)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3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²⁾ 상대적으로 촉박한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를 대통령선거와 동일하게 3회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후보자가 유세·대면 접촉 등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담·토론회 불참사실을 투표소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투표방식별 투표시기 및 장소와 대담·토론회 개최시간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거소투표의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투표자는 별도의 투표소가 아닌 자신의 거소에서 기표한 후 등기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이므로 ‘투표소 입구’에 불참사실을 게시하는 방식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선상투표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되고, 재외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2)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중 6일 이내의 기간에 실시되는바,³⁾ 대담·토론회가 이들 투표의 개시 또는 종료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불참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음. 특히 개정안은 시·도지사선거의 최초 대담·토론회를 사전투표 개시일 전 3일, 즉 선거일 전 8일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선상투표 개시시점과 맞물릴 수 있으므로, 대담·토론회 불참사실의 게시 시기와 각 투표방식별 투표기간 간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고 대담·토론회 불참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시·도지사선거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선거운동기간에 비추어 대담·토론회의 개최 횟수가 적정한지, 각 투표방식의 특성과 투표시기 등을 고려할 때 불참사실의 게시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의무 횟수를 상향할 경우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의 정견·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청 후보자는 짧은 선거운동기간(13일)에 다른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